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창원시의회 의장 이 해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 규칙 제54호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를 “6주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를 “청사의 안전을 유지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무 사용 기한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자부터 적용한다.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부터 <u>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u> 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담당관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 ----- <u>6주 이내</u> ----- ----- ----- ----- -----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의정담당관 사무실 또는 1층 의회 입구에 위치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 ----- ----- --. <u>다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u>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u>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 ----- <u>청사의 안전을 유지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야</u> ---.
1. ~ 5. (생략)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휴무 1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회기(정례회·임시회) 기간에는 휴무 사용이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여 휴무 사용 기한을 ‘6주 이내’로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휴무를 보장하고자 함.
- 현행 규칙에 명시된 일반 임무 외에도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근무 장소에 관한 준수사항을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 기한을 ‘6주 이내’로 함(안 제5조)
- 나.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에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